27. 조선소 사상공의 기관지확장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성별 남 나이 58세 직종 사상 **업무관련성** 낮음

- 1. 개요: 근로자 허○○은 28년 8개월 간 선박제조업체에서 사상 작업을 하다가 2005년 기관지확장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 2. 작업환경: 24세 때인 1971년부터 2002년까지 28년 8개월간 선박업체에서 선박의 사상작업을 하였다. 도료가 벗겨진 용접 부위를 핸드 그라인더(hand grinder)로 사상 작업을 하였고, Shop안에서 작업할 뿐만 아니라 선박 안에서도 작업을 하였는데 선박 안에서 작업한 후에는 바닥에 떨어진 잔재물을 청소하였다. 2003년부터 2004년 4월 퇴직할 때까지 15개월은 특수선 내부에서 스프레이 도장이 되지 않은 부위를 도료와 경화제를 섞어 붓이나 롤러로 마무리하는 터치업 작업을 하였다. 특수선의 철판의 구성성분은 철 외에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알루미늄, 크롬, 니켈, 구리, 몰리브덴, 바나듐, 티타늄이 미량 포함되어 있었다. 특수선에 사용하는 도료는 중방식 알카드유성 및 중방식 에폭시(epoxy)후박형도료를 사용하였다.
- 3. 의학적 소견: 1990년 하지 정맥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척추강 협착증, 경추부 염좌 등으로 산재요양을 받았다. 흡연력은 하루 반갑에서 한갑의 담배를 30년 정도 흡연한 기록이 확인할 수 있었다. 1991년부터 특수건강진단 단순흉부방사선사진에서 기관지확장증소견이 의심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계속된 감기에 의한 기침, 가래, 호흡곤란으로 천식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다. 특진에서 심한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있었고 기관지의 가역성은 없었으며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에서 55종의 항원에 대하여 모두 음성이었다.

4. 결론: 근로자 허〇〇은

- ① 특진에서 기관지확장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되었으며,
- ② 기관지확장증은 특수건강진단에서 1993년부터 진단되었고(1991년부터 의심됨).
- ③ 상기 근로자가 장기간(28년간)의 사상 작업으로 인한 분진에 노출되어 이에 따른 기 관지확장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 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 ④ 상기 근로자의 흡연기간이 약 30년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이 흡연력이므로, 상기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인 흡연보다 더 강력한 발생원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근로자 허○○의 기관지확장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